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7219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190,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 B대학교 등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1964. 1. 18. 설립된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6. 12. 7.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그 허가에는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이 붙어 있다.

> 라. 허가조건
> 1)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재산처분금은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3)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합니다.
> 4) 현재 산학협력단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산학협력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이전 완료 후 처분하여야 합니다.
> 5)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5억 원(계약금 14억 원은 계약 시 지불, 1차 중도금 46억 원은 2017. 11. 24.에 지급,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8. 1. 15.에 지급, 잔금 65억 원은 2018. 2. 19.에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로부터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로 6억 2,100만 원을 [redacted]시 [redacted]구에 신고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8. 3.경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redacted]법원 2018가합514441호)를 제기하였고, 2019. 8. 12.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처분 허가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 허가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처분 허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redacted]법원 2019나2037777호)하였으나 2020. 8. 19.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마쳤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2020. 10. 2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위 취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redacted]구청장은 2020. 10. 27. 원고에게 위 취득세 6억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반환 결정일까지의 이자 34,277,020원 합계 655,277,020원에서 원고의 체납 지방세 186,190,670원을 공제한 469,086,350원만을 반환하였다.

○ 위와 같이 공제된 186,190,67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1. 17.경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20.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7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이상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납부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환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취득세 상당액 186,190,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도세'이다. 따라서 피고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redacted]도에 납입하는 것은 [redacted]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피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redacted]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의 반환인 이상, 피고가 [redacted]도로부터 취득세의 징수, 환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취득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redacted]도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행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점을 덧붙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목 록

1. [redacted]시 [redacted]구 D 대 4,955㎡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 2층 업무시설

1층 1,393.48㎡

2층 482.11㎡. 끝.